

# 예 산 총 칙

2009년도 본예산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18,667,486	9,560,025
일반회계	285,204,309	8,556,129
특별회계	33,463,177	1,003,895
공기업특별회계	29,984,959	899,549
상수도공기업	14,777,451	443,324
하수도공기업	15,207,508	456,225
기타특별회계	3,478,218	104,347
주택사업	813,405	24,402
의료급여기금운영	665,295	19,959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41,694	4,251
공영개발사업	405,418	12,163
장기미집행	700,000	21,000
농공지구조성사업	224,596	6,738
기반시설	10,000	300
수질개선	517,810	15,53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 행위 사업은 별첨 "채무부담 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517,313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7,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